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3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6.

발 의 자:김도읍・윤한홍・구자근

주진우 · 김소희 · 조승환

김기현 · 조지연 · 이성권

박정하 • 박정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거급여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수선유지비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,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,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 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 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, 제8조의2 신설,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·제2호·제5호 등).

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(안 제7조의2제1항).

그 외 「사회보장기본법」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「주거급여법」 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수선유지비, 그 밖의"를 "수선유지비, 관리비 및 그 밖의"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"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"를 "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"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"수급자의"를 "수급권자의"로, "수급자와 분리하여" 를 "수급권자와 분리하여"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관리비의 지급)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(이하 "관리비"라 한다)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 - ② 관리비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, 소득인정액, 거주형태,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 - ③ 관리비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

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제2호 중 "임차료"를 "임차료 또는 관리비"로, "차임(借賃) 을"을 "차임(借賃)이나 관리비를"로 한다.

제17조제3항제1호, 제2호 및 제5호 중 "임차료 및 수선유지비"를 각각 "임차료,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게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주거급여"란 「국민기초생	1		
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2			
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			
에 필요한 임차료, <u>수선유지</u>	<u>수선유지</u>		
<u>비, 그 밖의</u> 수급품을 지급하	<u>비, 관리비 및 그 밖의</u>		
는 것을 말한다.			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		
제6조(보장기관) ①・② (생 략)	제6조(보장기관) ①・② (현행과		
	같음)		
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・수급	3		
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			
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			
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			
위하여 <u>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</u>	위하여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		
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	•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		
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	한 법률」 제43조		
	<u>.</u>		
제7조의2(주거급여의 분리 지급)	제7조의2(주거급여의 분리 지급)		
① <u>수급자의</u> 미혼자녀 중 19세	① <u>수급권자의</u>		
이상 30세 미만인 자(이하 이			
조에서 "청년가구원"이라 한			

다)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<u>수급자와 분리하여</u>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관리비의 지급) ① 제2 조제1호의 관리비(이하 "관리 비"라 한다)는 타인의 주택등 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 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 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 ② 관리비의 보장범위 및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 자의 가구규모, 소득인정액, 거 주형태,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③ 관리비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있다. 제10조(신청조사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제11조(확인조사) ① 특별자치시 7 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 수 · 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 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(이하 "확 인조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1. • 2. (생략)

3. (생략)

<신 설>

② (생략)

- 주거급여의 중지) ① (생 략)
 -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제10조(신청조사)	1 •	2	(현행	과
같음)				

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
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
청조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
부렁으로 정하는 관리비의 지
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
조사할 수 있다.

제11조(확인조사)	①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
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14조(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제14조(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) ① (현행과 같음)
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 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수급자가 지급받은 <u>임차료</u> 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<u>차임(借賃)을</u> 연체 한 경우

③ (생략)

제17조(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 산화) ①·② (생 략)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 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·관 리·보유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1. <u>임차료 및 수선유지비</u>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

1. (현행과 같음)
2 임차료
<u> 또는 관리비</u>
<u>차임</u>
(借賃)이나 관리비를
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
산화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
출하는 서류(「개인정보 보호 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 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)

- 2. <u>임차료 및 수선유지비</u>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자료
- 3. 4. (생략)
- 5. 그 밖에 <u>임차료 및 수선유</u> 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

④·⑤ (생 략)

2. 임차료, 수선유지비 및 관리
<u>用</u>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5 임차료, 수선유지
<u>비 및 관리비</u>
④·⑤ (형행과 같음)